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가단1332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3. 8.

판 결 선 고 2022. 5. 31.

주 문

1. C과 피고 및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20. 4. 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2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2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와 D 사이에 2021. 10. 28.자 조정예 갈음하는 결정이 2021. 11. 19. 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C에게 3,8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금리 연 11.7%,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해주었다.

나. C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E은 2016. 5. 20. F 유한회사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6. 5. 23.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다. F 유한회사는 2019. 6. 20.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 사무를 위임받은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양수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차전161888), 'C은 원고에게 85,993,373원 및 그 중 28,848,341원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20. 10. 25. C에게 송달되었으며, 2020. 11. 1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한편 2021. 5. 24. 기준으로 위 대여금 채권내역은 원금잔액 28,828,341원, 인수전 이자잔액 48,210,741원, 인수후 이자잔액 14,300,637원 합계 91,359,719원이다.

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G가 1989.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었는데, G가 2019. 10. 14.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자녀들인 H, D, C, 피고, I, J, K(법정상속분 각 1/8)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은 2020.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전부 D와 피고의 소유(각 1/2 지분)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위 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0. 4. 1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D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2010. 11. 18. 전세금 60,000,000원, 전세권자 L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20. 6. 17. 해지를 원인으로 2020. 6. 24.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의 없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집안 살림을 하는 등 특별히 기여하였고 망인도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하였고 다른 형제들도 동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가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른 기여분이 있다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존재하였던 전세권자 L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이후 말소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위 기초사실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6.경 실거래가는 1억 1,000만 원이고, 위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며, L 명의의 전세권의 피담보채무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위 부동산 중 C의 상속분 상당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전세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부동산 가액 50,000,000원(=110,000,000원-60,000,000원) 중 C의 상속지분 1/8에 해당하는 6,250,000원(=50,000,000원×1/8)이고, 한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액(피보전채권)은 91,359,719원이다.

위 피보전채권액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91,359,719원과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상당액 6,250,00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6,2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와 D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각 1/2 지분에 해당하는 각 3,1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및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12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

별지